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182
----------	-------

발의연월일 : 2025. 12. 11.

발의자 : 조인철 · 정준호 · 양부남

민형배 · 박희승 · 안도걸

이해민 · 정진욱 · 최혁진

전진숙 · 박지혜 · 박균택

여기구 의원(13인)

### 제안이유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한 척도로써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정부는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은 물론, 민간에서의 연구 및 개발과 상용화를 뒷받침하고 있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에서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근거법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인공지능기술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기반 시설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전담기관의 지정, 통계의 작성, 실태조사, 데이터센터 건축·운영·관리에 대한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인허가 간소화, 세제 지원, 전력 및 용지·용수 확보 지원, 데이터 지원, 해외 사업자 유치·제휴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 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입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및 변경·해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에 대한 지원, 비수도권 구축 지원, 규제 개선의 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기술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기반 시설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2.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② 이 법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적용되는 지원 및 규제의 특례

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률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기반 조성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효율적 구축과 진흥을 위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발전 목표 및 정책 방향
2.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입지, 전력 수급, 네트워크 연계 방안
3.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기술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4.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관련 제도 개선 사항
5.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데이터 수집·보관·활용 촉진 방안
6. 재원 조달 및 공공수요 발굴 등의 투자 활성화 방안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현황, 기술 동향, 전력 사용량, 안전

관리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데이터센터 건축·운영·관리에 대한 기준) ①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고전력·고집적·고성능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구조, 전력 설비, 냉각 시스템, 보안, 재난 예방 및 복구 등에 관한 별도의 기술 기준 또는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준 또는 지침을 정함에 있어 「건축법」, 「전기사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통계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진흥과 기반 조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인허가 간소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 허가, 환경 평가 등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창구의 통합 제공 등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 신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인허가 간소화에 관한 정책의 시행을 검토·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세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의 진흥 및 기반 조성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폐열회수기술, 단열기술, 액침냉각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효율화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 및 투자를 위하여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전력 및 용지·용수 확보 지원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하여 전력계통 연계계획 수립 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관련 부담금의 감면 또는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적합한 부지 확보를 지원하고, 냉각에 필요한 공업용수 등의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전용 전기요금 제도 도입 또는 지역별·시간대별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검토·추진할 수 있다.

제13조(데이터 지원) ①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의 안전한 수집·보관·학습·활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하여 인공지능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데이터의 적정한 수집·보관·학습·활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해외 사업자 유치·제휴 지원) 정부는 국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글로벌 기술 기업 등 해외 사업자와의 국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 및 국내 사업자와의 기술제휴·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5조(해외 진출 지원) 정부는 국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의견수렴 절차 마련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기준 또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정부 및 지방자체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주변 지역 주민에게 의견수렴 구역, 주체, 시기 및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한 경우 민원을 이유로 인허가 신청 및 착공 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

#### 제4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및 지역 활성화

제17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입지)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적합한 입지 선정을 위하여 별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18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①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분산에너지 활용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력 제조 산업이 집적된 지역과 연계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조 분야 인공지능 실증의 추진 및 제조 분야 인공지능 통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특구 지정 시 제조 분야 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제조 분야 데이터의 축적 방안을 마

련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른 제조 분야 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의 변경 및 해제) ①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의 변경 및 해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의 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1. 전력공급시설(송전선로, 변전소, 변환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2. 용수공급시설(용수관로, 가압장, 정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 시설

### 4. 공원 및 공동구

### 5. 그 밖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입주기업체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에 입주하는 입주기업체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및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대상사업, 사용료·대부료 및 감면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지매입의 요건 등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입주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내 토지 등 취득비용
2.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건축,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인프라 투자 소요비용
3.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그래픽처리장치·신경망처리장치 등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 취득비용

제21조(비수도권 구축 지원) ①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 및 전력 계통

안정화를 위하여 비수도권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세 감면, 보조금 지급, 기반 시설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 용량 이상의 규모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비수도권에 구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에 구축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해 전체 건설비의 최대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규제 개선의 신청 등) 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관리주체 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내 입주기업체, 연구기관 등은 인공지능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 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자

료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④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자료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 제2항 전단에 따른 검토 결과 및 신청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와 규제 개선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 인공지능기술 분야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규제 개선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